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대내외 환경변화 및 실·국 요청에 따른 전결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 기관 없음

라. 기 타: 특기할 사항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례)”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을 “산업통상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
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과장 외 4·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본부장, 차관”을 “차관, 본부장”으로, “담당자로”를 “담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위임전결사항은 “별표””를 “전결사항은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를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으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사항”으로, “당해업무”를 “해당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의 제목 “(전결처리의 예외)”를 “(전결사항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양자·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전결의 책임)”을 “(전결권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전결사항”을 “전결처리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과와 관련되는”을 “부서와 관련되는”으로, “과와 협의”를 “부서와 협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2018년 11월 1일”을 “2026년 4월 13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0월 31일”을 “4월 12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u><br><u>위임전결규정</u>                                                                                                                                                                                                                                                                                                                                                                     | <u>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u><br><u>위임전결규정</u>                                                                                                                                                                                                                                                                                                                                                                      |
| <p>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부장”이라 함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li> <li>2. “실장”이라 함은 통상차관보, 각 실의 장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li> <li>3.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li> </ol>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br/>-----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li> <li>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li> <li>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li> </ol> |

사관, 통상정책국장, 통상협력  
국장, 당해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  
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  
품장비협력관, 산업기술융합  
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견  
기업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  
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  
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  
무역협정교섭관, 신통상질서  
정책관, 통상법무정책관, 무역  
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  
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및 경  
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기위  
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  
장을 말한다.

5. “담당자”라 함은 과장 외 4·  
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행정기  
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

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  
다.

5. “담당”이란 과장 외 4·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7. “직무대리규정”이라 함은 기  
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  
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의 운영원칙 등을 인사혁신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  
을 말한다.

제5조 (생 략)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  
에서의 전결권자는 본부장, 차  
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  
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  
업등록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  
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  
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  
----- 차관, 본부장  
----- 담당으로  
-----.

제6조(전결사항) ① -----  
전결사항은 별표-----.  
-----  
-----  
-----  
-----  
-----  
-----.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 중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은 실장 및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② -----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 사항-----  
-----  
-----  
-----  
----- 해당 업무-----  
-----  
-----  
-----  
-----  
-----.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4. 양자·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

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 3, 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양자·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
|-------------------------------------------------------------------------------------------------------------------------------------------|--------------------------------------------------------------------------------------------------------------------------------------|
| <p><u>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                                                                                                                                      |
| <p><u>제9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u>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 <p><u>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u>-----<br/>-----.</p>                                                                                 |
| <p><u>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u> 중 다른 <u>과와 관련되는</u> 사항은 해당 <u>과와 협의</u>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u>당해</u>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u>상급자의 결재</u>를 받아야 한다.</p> | <p><u>제9조(협의사항)</u> -----<br/>--- <u>부서와 관련되는</u> -----<br/>-- <u>부서와 협의</u>-----<br/>----- <u>해당</u> -----<br/>-----<br/>-----.</p> |
| <p><u>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u></p>                                                        | <p><u>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
| <p><u>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u></p>                                       | <p><u>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u> -----<br/>-----<br/>-----<br/>「<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p>                                       |
| <p><u>제12조(분석·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u></p>                                                                                         | <p><u>제12조(분석·평가)</u> -----<br/>----- <u>제6조</u>-----</p>                                                                            |

|                                                                                                                                                                                        |                                                                                                                                                                |
|----------------------------------------------------------------------------------------------------------------------------------------------------------------------------------------|----------------------------------------------------------------------------------------------------------------------------------------------------------------|
| <p>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p>-----<br/>-----<br/>-----.</p>                                                                                                                              |
| <p><u>제13조(직제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u></p> <p><u>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 <p><u>제13조(직제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u><br/><u>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u><br/><u>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u><br/><u>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u><br/><u>개정된 것으로 본다.</u></p> |
| <p><u>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 <p><u>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u>-----<br/>-----<br/>----- 2026<br/><u>년 4월 13일</u>----- <u>매 3년</u><br/>----- 4<br/><u>월 12일</u>-----<br/>-----<br/>-----.</p>    |